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32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가문일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6. 23. 접수 제12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E에게 카드사용(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채권은 G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9차전566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9,609,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3.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 15. 확정되었다.

다. E의 아버지인 H는 2019. 12.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I, 자녀인 E, 피고 B, J, 피고 C, K, 피고 D이 있다.

라. 망 H의 상속인들은 2019. 12. 28.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6. 23. 접수 제12035호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E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D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들이 그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4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

목록

1. 충남 태안군 L 대 351㎡
2. 충남 태안군 M 답 1,236㎡.끝.

